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
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

2015년 1월 30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765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64조 및 행정안전부”를 “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82조 및 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정보통신부장관”을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64조 및 행정안전부”를 “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82조 및 행정자치부”로 변경 (제5조의2제1항)

나. “정보통신부장관”을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으로 변경 (제14조제1항)